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김동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동아 의원)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10.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u>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u>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제1항¹⁾은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업시설, 어린이

1)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중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집,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증축·개축하려는 경우 시설의 운영 전에 미리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1~2023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현황

연도	실시건수(건)
2021년	21,949
2022년	40,248
2023년	43,769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다중이용시설은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 내 사람의 밀집도가 높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 운영 전에 미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2)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한 현상변경³⁾,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한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⁴⁾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이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연유산이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훼손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한 제13조를 위반하더라도 형벌, 과태료, 행정처분 등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3. (생략)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5. (생략)

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점검 의무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공동주택 등의 정기점검 등 여러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위반 시 제재수단에 각각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제재수단 및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위반 시 제재수단

안전점검 종류	제재수단
◦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제9조)	◦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호)
◦ 자가용·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정기검사(제11조)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 벌금(제50조)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제12조)	◦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 등의 정기점검(제14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u>
2.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